〈要 約〉

Ⅰ. OECD 加入과 産業政策

○ OECD 加入의 意味
- OECD 가입은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경제 전반의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임
- OECD 가입에 따라 자유화·개방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국제적 규약의 이행 수준도 높아질 것이므로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재검토·조정이 필요함

○ 産業政策 變化의 必要性
-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OECD에서 개진되고 있는 논의는 개별 기업의 행위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시장 내 기업간 관계, 정부-기업 관계 등 구조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함

Ⅱ. 産業政策 關聯 OECD의 立場

○ 産業政策에 대한 基本 原則
- OECD는 1994년에 개최된 고성장비회원국(Dynamic Non-Member Economies; DNMEs)과의 Workshop에서 산업정책은 가능한 한 市場메카니즘에 기초하여 운용되어야 함을 강조함

○ 産業構造政策
- 완전고용과 적정 성장이라는 취지 아래 다각적인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함

○ 産業組織政策(競爭政策)
- 주로 OECD 내 경쟁법·정책위원회 및 무역위원회에서 담당
- 경쟁정책 일반
  · 자유로운 시장 접근을 저해하는 反경쟁적인 기업 관행, 정부의 진입·가격 규제 등 정부규제가 초래하는 경쟁제한성 문제 등이 논의의 주요 대상임
- 규제완화·민영화와 경쟁정책
  · 규제완화·민영화는 경쟁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임
  · 정부 규제의 폐지·완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독점적 시장구조를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무역 마찰 요인을 줄이고자 함

○ 産業政策 가이드라인 評價
- 경쟁 촉진과 시장 경제 창달을 지향하나, 그 이면에는 선진산업국인 OECD 회원국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음
  · 특히 조선, 철강 등 선진국이 경쟁력을 잃어 가는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정책들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음

〈要 約〉

Ⅲ. 우리나라 産業政策의 特徵과 環境 變化

1. 旣存 産業政策의 評價

○ 産業政策의 特徵
- 정부는 각종 진입제한 수단을 활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목표로 정한 특정 산업(기업)을 선별적으로 보호·육성하여 왔음

○ 産業政策의 效果
- 공기업·민간 대기업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 속에서 국내 각 해당 부문에서의 지배력을 획득하여 왔음
- 경쟁제한적인 산업정책은 국내 부존자원이 부족한 후발산업국으로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컸으며, 경제발전 초기에는 상당한 성장 효과를 가질 수 있었음

2. 産業政策 環境의 變化와 課題

○ 對內的 環境의 變化
- 경제 규모가 대형화·고도화하면서 산업(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 내지 타당성이 줄어듬
- 소비자 선호가 다양화되고 소비자 이익의 증대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

○ 對外的 環境의 變化
- 자유화·개방화의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산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지상과제로 됨
- 자유로운 시장진입(Market Access) 뿐만 아니라 시장 내에 주재하는(Market Presence) 기업에 대해 공정한 활동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국제적 수준의 요구가 강화됨

○ 産業政策의 課題
- 기존의 경쟁제한적인 산업정책은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 후생의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상 마찰의 주요 원인이 됨
- 변화된 환경에서의 산업정책은 경쟁정책의 강화를 통해 기업(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국제적 수준에서의 요구에 부응하되,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要 約〉

Ⅳ. 政策提言: 市場經濟의 活性化

○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장메카니즘이 활성화되어야 함

1. OECD가 要求하는 政府-企業의 關係

○ 개별 기업의 행위는 물론 정부-기업 관계 또한 시장 메카니즘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재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바람직한 정부-기업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이며, 이는 곧 민간 주도 경제의 실질적인 정착임

○ OECD 가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BIAC(경제산업자문기구)등 민간부문의 의사나 요망 사항을 수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임

2. 先進化된 産業政策의 方向

○ 基本 方向

- 기본 원칙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임
- 경쟁력 강화는 물론 통상 마찰의 해소를 위해서도 OECD의 경쟁정책 논의를 충분히 수용해야 할 것임
- OECD 가입은 기업(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낳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산업정책적 노력도 필요함
  · 예컨대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원화절상이나 수입선 다변화 조치의 해제로 기업의 경쟁력은 저하될 것임

○ 主要 課題

-<산업구조정책>

· OECD의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성장산업·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조정책, 예컨대 산업기반의 확충 등이 필요함
· 사양산업·불황산업의 퇴출장벽을 제거하여 가장 싼 비용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국민경제적 부담(예컨대 실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OECD에서도 사양산업·불황산업의 방치 보다는 효율적인 정부보조금 지원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

-<산업조직정책>

·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 엄격히 적용하고, 정부의 가격·진입 규제 등 경쟁제한성이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임. 그리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경쟁체제를 형성해야 함

Ⅰ. OECD 加入과 産業政策

○ OECD 加入과 經濟政策
- OECD 가입에 따라 자유화·개방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국제적 규약의 이행 수준도 높아질 것이므로 그 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해 짐

○ OECD 加入을 둘러싼 論議
- OECD 가입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나 금융 등 서비스 부문에 미치는 효과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어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가 간과되고 있음

○ 産業政策 論議의 重要性
-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OECD에서 개진되고 있는 논의는 개별 기업의 행위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장 내 기업간 관계, 시장-정부 관계 등 구조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음
- OECD 가입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올바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직접적 강제 규정은 없지만, OECD 가입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정책 변화는 필연적임

○ OECD 加入과 經濟政策
- OECD에 가입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변경시켜야 하는 강제성은 없음
  - OECD 기구는 회원국의 이해를 조정하고 도모하는 협의체적·클럽적 성격을 띠고 있음
  - 비록 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자유화 의무 등 의무사항이 있으나 강제력을 갖지는 않으며, 또한 가입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상당히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OECD에 가입함에 따라 개방화·자유화의 진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함
  - 국내 산업(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
- 또 OECD의 의무 및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압력이

국제기구(WTO 등)나 쌍무협상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

· 더욱이 OECD에 가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현저히 높아졌음을 감안할 때, 기존의 OECD 권고 사항은 물론 향후 WTO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다루어질 각종 라운드에 따라 국제 규약을 이행하는 속도나 정도를 높이지 않을 수 없음

OECD 가입을 둘러싼 논의가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 산업별로는 금융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OECD 加入을 둘러싼 論議

- OECD 가입에 따르는 논의는 우리 경제에 미칠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에 치중되어 있음

· 특히 OECD 가입에 따라 더욱 진전될 개방화·자유화의 효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미칠 분야 중 하나인 금융 등 서비스 부문의 대책 마련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음

- OECD 가입이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에 미치는 효과나 산업정책의 변화 방향 등에 관한 논의는 단편적으로만 있을 뿐임

· 자칫 미시경제적, 특히 산업정책적 차원의 대비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음

· 개별 산업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체의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중요함

산업정책에 관한 논의는 개별 기업의 행위 뿐만 아니라 구조 개편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임

○ 産業政策 論議의 重要性

- 각국(회원국)의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OECD에서 개진되고 있는 논의는 개별 기업의 행위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내 기업 간 관계, 시장-정부 관계 등 구조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음

· OECD의 논의는 산업정책 중에서도 산업조직정책, 특히 각 산업 부문에서 (유효)경쟁시장이 확

보되어 있는가, 경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외국 기업의 시장접근이 가능한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1)]

- OECD 가입은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음
  - 산업별로는 서비스 부문,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취약한 부문이며, 제조업 부문 내에서도 각 산업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짐
  - 기업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은 주로 선진 정보·기술 습득의 용이함, 해외시장의 확장 등과 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업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 등임, 한편 부정적인 면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국내시장의 잠식 등임

올바른 산업조직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OECD 가입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산업(조직)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올바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산업정책은 크게 산업구조정책과 산업조직정책으로 구분됨. 산업구조정책이란 상품의 수요와 공급, 가격의 형성 등과 같은 시장메카니즘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구조의 면에서 시장 자체의 기능에 의한 성과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를 의도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임. 한편 산업조직정책이란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들 간의 관계를 경쟁원리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경쟁질서 정책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시장이 불완전하여 바람직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임. 또한 정부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함

Ⅱ. 産業政策 關聯 OECD의 立場

○ 産業政策에 대한 基本原則
- 산업정책은 가능한 한 市場 메카니즘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함, 즉 경쟁제한적 산업정책은 경쟁정책으로 대체되어야 함

○ 産業構造政策
- 완전고용과 적정 성장이라는 취지 하에 다각적인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産業組織政策(競爭政策)
- 경쟁정책 일반
  · 자유로운 시장 접근을 저해하는 反경쟁적인 기업 관행, 정부의 진입 및 가격 규제 등 정부 규제가 초래하는 경쟁 제한성 문제 등이 논의의 대상임
- 규제완화·민영화와 경쟁정책
  · 정부 규제의 완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독점적 시장구조를 청산함으로써 소비자(수요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무역 마찰 요인을 줄이고자 함

산업정책은 시장 메카니즘에 기초해야 함

○ 産業政策에 대한 基本原則
- OECD의 기본 원칙은, 각국의 산업정책이 가능한 한 시장 메카니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임
  · OECD는 1994년에 개최된 고성장비회원국(Dynamic Non-Member Economies; DNMEs)과의 Workshop에서 산업정책은 시장 메카니즘에 기초할 것을 강조한 바 있음
  · 이는 곧 경쟁제한적 산업정책이 경쟁정책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임
  · 실제 선진 주요국의 경우, 대외적으로 자유화·개방화, 대내적으로 경쟁정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산업정책 영역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

일반적인 산업구조조정 및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 논의

○ **産業構造政策**

- 일반적인 산업구조조정 및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해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완전고용과 적정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산업구조조정 방안으로 ①자본시장 육성, ②과도한 정부지출 확대의 억제, ③학교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④사양산업 및 특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효율적인 정부보조금 지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음
  - 철강위원회와 조선위원회는, 각각 세계경제적 차원에서의 철강 및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하고 다자간 협상을 주도함
  - 철강위원회나 조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철강이나 조선수출국의 이해를 조정·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産業組織政策 關聯 論議**

- OECD 내 각국의 산업조직정책을 분석·조정하는 독자적인 위원회는 없음
  - 산업조직정책 관련 논의는 다른 정책에 관한 논의 속에 포함되어 있음
  - 산업조직정책에 관한 논의 내용은 OECD의 주요 의제인 규제완화·민영화, 경쟁정책, 환경정책, 무역정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규정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경쟁정책 논의임

경쟁정책 논의의 기본 목적은 경쟁조건의 평준화를 형성하는 것임

○ **産業組織政策(競爭政策 一般)**

- 기본 목적은 경쟁조건의 평준화(level playing field)를 형성하는 것임
  - 자유로운 시장 접근을 저해하는 反경쟁적인 기업 관행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진입 및 가격 규제, 민영화 등 정부규제 분야까지 논의를 확대시키고 있음

· 경쟁정책은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WTO 제1차 각료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되어 경쟁라운드(Competition Round)로 이어질 전망임

- OECD 경쟁정책 운용의 기본 원칙
· 내국민대우
· 무차별원칙
· 최혜국민대우
· 명료성
· 법의 지배와 적정 절차 보장
· 국가간 호양의 원칙에 따르고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력의 지배는 배제될 것
- 주요 정책 방향
·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정부 지원·간섭의 최소화
· 시장 진입 규제에 대한 대내외 장벽의 완화
· 공정한 경쟁 질서 및 제도의 확립
· 외국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등
- 주요 논의 사항
· 수평적 제한: 수출입 카르텔, 가격 고정, 다국적기업간 협정 등
· 수직적 제한: 배타적 거래, 판매지역 제한, 재판매가격 유지 등
· 지적 재산권: 기술이전과 관련된 제한, 특허·상품권 남용 등
· 무역조치: 수출자율규제, 반덤핑·보조금·상계관세
· 기타: 정부조달, 국영무역, 공기업 등
- 현재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대책
· 카르텔 및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수직적 제한에 대한 규제
·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反덤핑조치를 경쟁정책으로 대체
·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反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가간 정보 공유
·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

범위의 확대 등

정부규제의 완화 및 민영화를 통해 독점적 시장구조를 청산해야

○ **規制緩和·民營化와 競爭政策**

- 규제완화·민영화는 경쟁정책이 효력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임
- 정부 규제 및 공기업은 시장 접근 기회 및 경쟁 과정을 제한함
  - 정부 규제가 강력하고 공기업이 주요 산업을 지배하는 경우 경쟁정책이 시장경제에 통용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줄게 됨
  - 규제와 공기업은 해당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키는 것임
  - 정부의 규제나 공기업을 통한 시장지배적 기업은 유통 체계를 장악(수직적 협정 등)하거나 저가 공급 등을 통해 시장 접근을 제한할 소지가 많음
- OECD의 기본 입장은, 정부 규제의 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독점적 시장구조를 청산함으로써 소비자(수요자) 이익의 증진은 물론 시장접근 제한 요소를 줄여 무역 마찰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임
  -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OECD는 특히 송전망, 가스파이프라인, 통신망, 철도망 등 네트워크형 산업에 대한 공정한 접근 보장을 논의하고 있음

OECD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다분함

○ **産業政策 關聯 OECD의 立場 評價**

- 경쟁 촉진과 시장 경제 창달을 지향하나, 그 이면에는 선진산업국인 OECD 회원국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음
  - 특히 조선, 철강 등 선진국이 경쟁력을 잃어 가는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정책들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음

Ⅲ. 우리나라 産業政策의 特徵과 環境 變化

1. 旣存 産業政策의 評價

○ 産業政策의 特徵

- 정부는 각종 진입제한 수단을 활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특정 산업(기업)을 선별적으로 보호·육성하여 왔음

○ 産業政策의 效果

- 공기업은 물론 민간 대기업은 각각 그 해당 부문에서 국내 경제의 지배력을 획득하여 왔음
- 경쟁제한적인 산업정책은 국내 부존자원이 부족한 후발산업국으로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컸으며, 경제발전 초기에는 상당한 성장 효과를 가질 수 있었음

2. 産業政策 環境의 變化와 課題

○ 對內的 環境의 變化

- 경제 규모가 대형화·고도화하면서 산업(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 내지 타당성이 줄어듬
- 소비자 선호가 다양화되고 소비자 이익의 증대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독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짐

○ 對外的 環境의 變化

- 자유화·개방화의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산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지상과제로 됨
- 국경에서 뿐만 아니라 국경 내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요구가 강화됨

○ 産業政策의 課題

- 경쟁제한적인 산업정책은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 및 후생을 떨어뜨리고, 선진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통상 마찰의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지 못함
- 변화된 환경에서의 산업정책은 경쟁정책의 강화를 통해 기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국제적 수준에서의 요구에 부응하되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함

1. 旣存 産業政策의 評價

정부는 진입 제한 수단 등을 통해 공기업과 민간기업, 그리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함

○ 産業政策의 特徵

- 정부는 경제적 규제, 행정적 규제 등을 통해 각 산업 부문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왔음
  -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및 핵심적 생산요소 생산 부문을 공기업 형태로 설립·유지하는 한편, 민간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경공업(1960년대) 및 중화학공업(1970년대 이후) 부문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 이러한 분업구조 하에서 민간기업은 공기업 부문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민간기업 간에도 특정 부문으로의 진입을 억제시킴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고, 목표로 정한 특정 산업(기업)을 선별적으로 보호·육성하였음
  -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한, 수입제한 조치 등을 통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였음

경쟁제한적인 산업정책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상당한 성장 효과를 가졌음

○ 産業政策의 效果

- 경쟁제한적인 산업정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압력이 미약한 경우나 생산요소의 양적 동원이 미흡했던 경제발전 초기에는 자원을 특정 산업(기업)에 집중시킴으로써 성장의 가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었음
- 그러나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이 문제되는 경제발전 단계에서 그러한 산업정책은 사회 후생의 감소는 물론이며 개별 기업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게 됨
  - 더욱이 개별 기업의 대외 저항력이 약화되어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경쟁 압력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됨

2. 産業政策 環境의 變化와 課題

경제 규모의 대형화·고도화, 소비자 선호의 다양화로 정부 규제나 독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비판 강화

○ 對內的 環境의 變化

- 경제 규모가 대형화·고도화하면서 산업(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이 줄어듬
  - 경쟁제한적인 산업정책은 기업의 진입·탈퇴의 자유를 제한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할 뿐 아니라 경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함
  - 정부(규제당국)와 피규제기업의 유착으로 기업 행위에 있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나타남
- 소비자 선호가 다양화되고, 소비자 이익의 증대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독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짐
  - 다양화된 소비자 선호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비자 이익을 떨어뜨리게 됨
- 결국 경쟁제한적인 산업정책은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되며, 이는 개방화·자유화 시대에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게 됨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과 공정한 경쟁질서에 대한 요구의 증대

○ 對外的 環境의 變化

- 자유화·개방화의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산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지상과제로 됨
- 자유로운 시장 진입(Market Acces) 뿐만 아니라 시장 내에 주재하는(Market Presence) 기업에 대해 공정한 활동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국제적 수준의 요구가 강화됨
  - 선진국의 개방 및 자유화 압력이 시장접근·시장주재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일국 내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기업 관행의 변경 압력이 거세어짐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개발도상국으로서 누리던 혜택을 상실하는 한편 국제적 수준의 규약 등 제반 협정에의 준수 요구가 강화됨

기존의 산업정책은 개별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함

○ 産業政策의 課題

- 경쟁제한적인 산업정책은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후생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통상 마찰의 주요 원인이 됨
  - 특히 OECD에 가입한 이상 OECD의 경쟁법·정책에 관한 논의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의 경쟁제한적인 산업정책은 재고되어야 함
- 기존 산업정책 수단의 한계와 효력
  - (금융적 수단의 한계) 국내 금융시장의 확대, 외국자본의 유입 등으로 금융공급이 확대됨으로써 정부의 금융 수단에 기초한 정책 구사가 어렵게 됨
  - (행정·재량적 수단의 한계) 경제 규모의 증대와 함께 개방 경제로 이행하면서 정부의 자의적·직접적 정책 수단이 더 이상 쉽게 용인되지 않음
- 산업정책의 효과 저하
  - 개방화 시대에 산업정책의 효과가 외국 및 외국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선별적 정책이 어렵게 됨으로써 특정 산업(기업)의 육성을 기대하는 효과가 저하됨

변화된 환경에서의 산업정책은 대내외적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어야 함

- 변화된 환경에서의 산업정책은 경쟁정책의 강화를 통해 기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또한 국제적 수준에서의 요구에 부응하되,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임

Ⅳ. 政策提言: 市場經濟의 活性化

1. 政府-企業의 關係

○ OECD는 개별 기업의 행위는 물론 정부-기업 관계 또한 시장메카니즘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재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2. 産業政策의 變化 方向 및 主要 內容

○ 基本 方向

- 기본 원칙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수요자)의 이익이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임
- OECD의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성장산업 및 첨단(유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②사양산업이나 불황산업의 퇴출장벽을 제거하여 퇴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산업(기업)구조 및 조직과 관련된 정책 순위에 있어 경쟁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함

○ 主要 課題

- 공정거래법의 운용 관련
  - (적용 대상)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 또는 예외 조항을 축소하여 국내외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적용 방식) 진입·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 구조 규제보다는 폐해 규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명료성 확보) 경쟁수준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와 함께 명확한 규정 하에서 실시되어야 함
-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 관련
  -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 예컨대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시장진입 제한 조치 등은 경쟁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함
- 규제완화·민영화 관련
  - 정부의 가격 및 진입 규제 등 경쟁제한성이 있는 각종 규제는 철폐되어야 함
  - 공기업 및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쟁체제를 형성해야 함

OECD 가입은 국내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제도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임

○ **OECD 加入의 活用**

- 대내적으로는 경제규모의 대형화·고도화, 대외적으로는 OECD 가입 등 세계 경제에서의 지위 상승으로 기존의 경쟁제한적인 산업정책이나 정부-기업 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함
- OECD의 가입은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제도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임
  - 그러나 OECD에는 쌍무적인 통상마찰을 해결하거나(예컨대 미일 통상마찰의 경우) 한나라 경제를 보호하는(멕시코 위기) 기능을 거의 갖지 못하므로 우리 경제의 여건에 맞추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1. OECD가 要求하는 政府-企業의 關係

정부-기업간 관계는 시장 메카니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평적 관계로 변해야 함

○ **政府-企業間 關係의 調整**

- OECD는 개별 기업의 행위는 물론 정부-기업 관계 또한 시장메카니즘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재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OECD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람직한 정부-기업의 관계는 정부 주도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이며, 이는 곧 민간 주도 경제의 정착임
  - 1996년도 OECD 한국보고서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간의 선택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자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민간 주도 경제 하에서 정부의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 서야 될 것임. 즉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활동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정·지원해야 할 것임

민간 부문의 의사 및 요망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民間部門의 意思 積極 受容

- OECD 가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의사 및 요망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임
- 예컨대 민간기구로서의 경제산업자문기구(BIAC)*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음

2. 先進化된 産業政策의 方向

기본 원칙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해야 함

○ 基本 方向

- 기본 원칙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수요자)의 이익이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임
  - 기본 방향은 시장 중심, 기업간 경쟁 수준의 제고, 기업 행위의 공정성·경쟁성 강화 등임
- OECD의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장산업 및 첨단(유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양산업이나 불황산업의 퇴출장벽을 제거하여 가장 싼 비용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예컨대 노동조합 등이 퇴출장벽을 이룰 수 있으므로, 재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이 필요할 것임

산업정책을 경쟁정책으로 대체하여 정부의 규제 및 독점으로부터 소비자(수요자)의 이익 보호

- 기존의 경쟁제한적인 산업정책 및 각종 경쟁억제정책을 경쟁촉진정책으로 대체해야 하며, 산업(기업) 구조 및 조직과 관련된 정책 순위에 있어 우선시되어야 함
  - 예컨대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 보다는 경쟁정책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임

경제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이나 성장잠재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 강구 필요

○ 主要 課題

[産業構造政策]

- 사양산업의 경우,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퇴출장벽 제거를 위한 제도를 개발·개선하되 국민경제적 부담(예컨대 실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성장산업의 경우, 기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던 각종 규제를 철폐·완화하여 자유롭게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 과정에서 기업(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업의 신규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쟁 수준의 제고 여부임
- 첨단(유치)산업의 경우,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 역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한정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함
- 중소기업이나 유치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 방식이 제한받을 것이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등 국민경제가 개방 속에서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보조금 등과 같은 직접적 보조 방식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님. OECD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조금 정책의 투명성 및 그 기준의 명확성임

[産業組織政策]

① 공정거래법의 운용 관련

- 우리나라의 경쟁법인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전반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고 엄격한 편이어서, 그 자체가 OECD 등에서 문제시될 소지는 크지 않음
- (적용 대상) 예외조치가 많고 적용제외 규정이 광범위하여,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큼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 또는 예외조항을 축소하고, 폐해 규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경쟁제한적인 기업 결합, 카르텔의 제한 및 규제 규정에 있어 예외적 허용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허용 조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금융·보험업 등은 상당 부분 경쟁법으로부터 적용 제외를 받고 있음
- 공기업 또한 경쟁법의 일부만 적용받고 있음
-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므로, 이들 외국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적용 방식)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 기업결합, 경제력집중 등 시장구조적 측면보다는, 행태적인 면, 즉 실질적으로 경쟁수준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조해야 함

- 미국, 일본 등 선진 주요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M&A, 계열화 등을 통한 경제력집중을 도모하여 무한경쟁 시대에 대처해 나아가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합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의 경우 명확한 규정 하에서 실시되어야 함

- (명료성 확보) OECD의 경쟁정책 운용의 기본원칙의 하나가 명료성의 원칙임. 이는 정부의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정책 시행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의 적용 제외나 예외 조치 등은 물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는, 그것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와 함께 명확한 규정 하에서 실시되어야 함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정책은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②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 관련

- OECD의 논의에 비추어 보건대, 이제까지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제반 규제 정책, 예컨대 경제력집중 억제, 시장진입 제한 등을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재고해야 함

- OECD에서는 예외가 많고 규제가 심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보다는 원칙이 분명하고 자기책임이

강조되는 경쟁촉진 정책으로 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음

- 신규업종 진출, 경제력집중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받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명확한 경쟁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구조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음
- 기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던 각종 규제를 철폐·완화하여 자유롭게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업의 신규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쟁수준의 제고 여부임
-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금융 부문 진출, 공기업 민영화에의 참여 등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경쟁제한성 여부로 규제 여부를 판단·시행해야 함
-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조 및 행태에 관한 사회적 불만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단 이 경우에도 정부에 의한 강제보다는 기업 스스로의 책임에 맡겨두어야 함

민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못한 경우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쟁체제가 형성되어야 함

③ 규제완화·민영화 관련

- 정부의 가격 규제 및 진입 규제 등 경쟁제한성이 있는 규제는 철폐되어야 함
- OECD에서 공기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정부의 규제로 독점 구조가 유지됨으로써 공정경쟁을 해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공기업 독점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OECD(또는 WTO 등)에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의 경쟁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최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되, 사정이 여의치 못한 공기업의 경우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여 경쟁체제를 형성해야 함

· 물론 여의치 못한 사정이라는 것이 정치적 판단이거나 또는 경제력집중 억제 등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공기업의 효율성 및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라는 면에 초점을 두고 그 방식이나 시기를 결정해야 함

○ **産業別 競爭體制 形成의 差別化**

- 경쟁체제의 형성이 모든 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경쟁체제의 형성이 해당 산업의 발전이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가의 여부를 산업별로 판단하여, 해당 산업에 적절한 정책을 실시해야 함

· 단 정책은 일관되고 투명해야 할 것임

OECD 가입을 계기로 선진경제에 걸맞는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정부는 OECD 가입을 계기로 시장메카니즘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해야만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박 동 철)

<附錄> BIAC

(經濟産業諮問機構,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 설립연월: 1962년 3월
○ 설립목적: OECD가 정부간 협의체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각국의 상이한 경제 부문을 대표하는 비정부 조직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성격: 회원국의 재계 대표로서 OECD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독립적인 조직임
○ 역할
- 기본적으로 OECD에 대한 자문역의 지위에서, 각 정책 사안들에 대한 민간 부문의 반응을 OECD에 통보함
- BIAC와 OECD는 상호관심사에 관해 다양한 수준에서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함

○ 산하 위원회(14개 위원회)
- 중동부 유럽
- 화학
- 경쟁법·정책
- 경제정책
- 교육
- 고용, 노동 및 사회문제
- 환경
- 정보, 컴퓨터 및 통신정책
- 국제 투자, 다국적기업
- 해양운송
- 천연자원
- 조세 및 재정정책
- 기술과 산업
- 무역

○ BIAC 한국위원회
- 1996년 11월 5일 공식 출범(위원장: 박웅서 삼성석유화학사장)
- 재계 중심의 민간기구로서, OECD 가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수행함